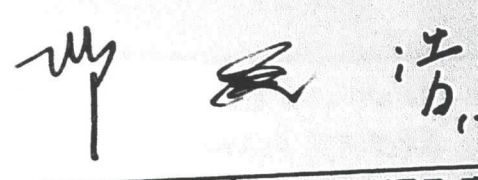


사전감시대상

감 사

문서번호	자산 5011 - 526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재 
처리기한	19 . . .	영구 년	
기 안	19 . . .		
발 신	1994 12. 28 .		
조사역 과 장 부부장 부 장			
 인 조			
기 안 자	김 도 원	합 의 (법규과) 기획부장	전 결 직무권한 분류표 제 1절 제 1항 제 1호
소 속	산 업 자 금 과		
직 위	행 원 전화 4496		

수 신
참 조
제 목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및 同 節次 改正

政府의 貿易業務 自動化事業(EDI)推進에 따라 內國信用狀 開設業務關聯 規程의 改正이 필요하게 되어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및 同 節次를 붙임과 같이 改正하고자 합니다.

- 붙 임 : 1. 內國信用狀 開設業務의 自動化推進關聯 規程 改正方案 1部.
 2.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및 同 節次 改正(案) 1部. 끝.



사본수신처

한국은행 행내 021-10('80.11.19)

()

발	업무	필요	타
송	기록	불요	자

제서식)

< 要 約 >

- 通商産業部에서는 貿易業務를 電子文書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방식에 의해 自動化하는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바 內國信用狀 開設業務도 自動化對象에 포함되어 있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當行 規程을 다음과 같이 改正

- 內國信用狀의 開設申請業務 關聯規程

- 內國信用狀 開設申請時 개설의뢰인이 은행에 직접 내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설신청시 징구하는 서류 가운데 供給者發行 物品賣渡確約書의 徵求 省略 (취급절차 제42조)
- 現在 詳細한 物品明細를 모두 記錄하도록 되어 있는 내국신용장을 EDI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代表物品名만을 記入하면 되도록 조치

- 開設通知 및 交付業務 關聯規程

- EDI방식에서는 내국신용장을 전송방식으로 교부하고 해당업체는 동 내국신용장을 전산출력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출력된 내국신용장이 EDI방식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正當發給文書임을 表示토록 義務化 (취급세칙 제30조)

- 內國信用狀 어음買入業務 關聯規程

- 內國信用狀 開設銀行이 물품매매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어음매입은행으로 하여금 內國信用狀 寫本 및 物品賣渡確約書를 徵求하여 開設銀行에 송부토록 규정 (취급절차 제48조)

- 開設銀行의 換어음決濟業務 關聯規程

- 支給拒絕事由에 內國信用狀을 偽·變造한 경우와 正當發給文書 表示義務를 遵守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 (취급세칙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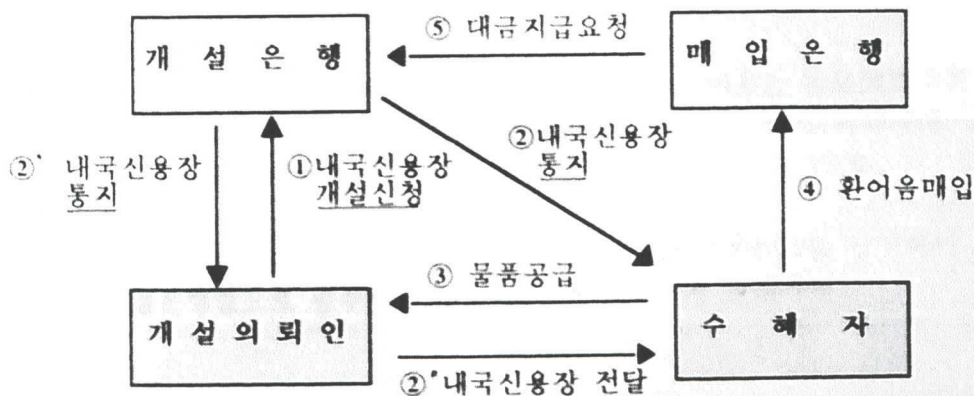
內國信用狀 開設業務의 自動化推進關聯 規程 改正方案

1. 檢討背景

- 通商産業部는 「貿易業務 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을 制定(91.12.31)하여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무역업무를 電子文書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方式에 의해 自動化하는 事業을 추진하고 있는 바, 內國信用狀 開設業務도 동 자동화대상에 포함
 - 內國信用狀 開設時 현재는 開設依頼人이 직접 開設銀行에 臨店하여 內國信用狀 開設을 申請하여 受領하고 있으나, 동 업무를 自動化할 경우 개설의뢰인이 은행에 臨店하지 않고도 EDI를 통한 電子文書로 內國信用狀 開設을 申請하여 수령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全國銀行聯合會에서는 內國信用狀 開設업무의 자동화에 필요한 當行의 規程 改正을 建議
 - * 무역업무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12개의 電子文書開發 專門委員會중의 하나인 外換・金融部門專門委員會(MD2) 會員銀行의 결의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 명의로 건의

==>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및 동 「節次」 개정 필요

현행 內國信用狀 거래절차



* 內國信用狀 開設業務을 자동화할 경우 ①, ②와 ②' 과정이 전자문서로 처리될

2. 檢討意見

- 電子文書交換方式을 통하여 內國信用狀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는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및 同 「節次」中 該當條項의 改正이 필요

가. 開設申請

(1) 開設申請時 徵求書類 省略

- 현재 內國信用狀 開設時 開設銀行은 개설의되인으로 부터 다음의 書類를 徵求하고 있음

- ① 供給者發行 物品賣渡確約書
- ② 內國信用狀 開設根據書類 (실적기준금융수혜업체 제외)
- ③ 所要量證明書 (실적기준금융수혜업체 제외)
- ④ 內國信用狀 受惠者の 生産(加工)能力保有 立證書類 (연 1회 징구)

- 그러나 電子文書交換方式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는 개설의되인이 가급적 은행에 내점하지 않도록 內國信用狀 開設時에는 物品賣渡確約書의 徵求를 省略하고 이를 환어음 買入時 徵求

- 內國信用狀 開設時 物品賣渡確約書를 징구하는 이유는 物品賣買事實 및 내국신용장 어음결제시 物品受領與否를 確認(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감일치 여부 확인)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은행이 환어음매입시 수혜자로부터 物品賣渡確約書를 징구하여 개설은행앞으로 송부하면 現行 制度와 同一하게 運用가능

- > 內國信用狀 開設時 物品賣渡確約書 徵求를 省略토록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節次」 제42조를 改正

(2) 內國信用狀 開設時 物品明細 入力

— 현재 開設銀行은 내국신용장 발급시 內國信用狀에 物品明細를 모두 記錄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급물품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物品明細를 複寫하여 이를 내국신용장에 부착하여야 함

— 그러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개설시에도 공급물품의 품목별, 규격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할 경우 業務煩雜 뿐만 아니라 이용자(수출업체 및 은행)의 通信回線 利用手數料 負擔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 電子文書交換方式에 의한 내국신용장에는 代表物品名만을 入力하도록 조치(공급대상물품의 세부내역 및 세부품목별 금액은 어음매입시 청구하는 물품매도확약서로 확인 가능)

• 공급물품명세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 개정은 불필요

나. 開設 通知 및 交付

— 현재 開設銀行은 受惠者에게 開設通知하고 수혜자가 달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惠者에게 直接 信用狀을 交付하고 있음

— 그러나 電子文書交換方式에 의한 경우 개설은행은 내국신용장을 電送方式으로 交付하고 해당업체는 동 내국신용장을 電算出力하여 使用하게 되므로 출력된 내국신용장이 正當發給文書임을 表示하는 장치 마련 필요

— >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제30조에 正當發給文書表示・義務를 준수토록 규정

- 「貿易業務 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施行規程」第12條에 의해 해당업체는 출력한 전자문서를 무역유관기관(금융기관 포함) 등 제3자에게 제출할 때는 다음의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함

본 문서는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내지 17조에 의거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이며, 위조 변조시 동법률 제25조에 의한
책임을 준수할 것을 확인함

19 . . .
제출자 ○ ○ ○ (인)

다. 內國信用狀 어음 買入

- 현재 買入銀行은 內國信用狀 어음 매입시에 물품매매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書類를 徵求, 어음을 매입하고 동 서류를 開設銀行으로 送付

- ① 환어음
- ② 物品受領證明書
- ③ 供給者發行 税金計算書 寫本

- 그러나 電子文書交換方式에 의한 경우 開設依頼人 또는 受惠者가 內國信用狀을 電算出力하여 정당발급문서 표시를 하므로 開設銀行은 동 표시 내국신용장이 개설시 전송방식으로 교부한 내국신용장과 同一한 것인지를 確認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자문서교환방식(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서 開設申請時 開設의뢰인으로 부터 物品賣渡確約書를 徵求하지 않으므로 어음매입시 이를 징구하여 物品賣渡確約書와 物品受領證明書上의 印鑑 一致與否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시 현행 징구서류외에 內國信用狀 寫本과 物品賣渡確約書 寫本을 追加로 徵求토록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節次」제48조 改正

라. 開設銀行의 환어음 決濟

- 電子文書交換方式에서는 內國信用狀이 開設銀行에서 直接 發行·交付되지 않고 個別業體에서 電算出力하여 사용하는 한편 개설신청시 物品賣渡確約書를 徵求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거절사유 관련 조항(「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

현	행	개	정	(안)
○ 物品受領證明書上의 受領人의 印鑑(署名)이 物品賣渡確約書上의 物品受領人의 印鑑(署名)과 相異한 경우		○ 開設依頼人이 交付받은 전자문서 교환방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에는 物品受領證明書上의 受領人의 印鑑(署名)이 內國信用狀 및 物品賣渡確約書상의 印鑑(署名)과 相異한 경우		
○ 物品受領證明書上의 物品明細가 內國信用狀上의 物品明細와 不致한 경우		○ 物品受領證明書上의 物品明細가 物品賣渡確約書上의 物品明細와 不一致한 경우(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에 의한 경우)		
(신	설)	○ 제시된 어음이 偽造, 變造된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		
(신	설)	○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이 正當發給文書 表示義務를 遵守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 현재 內國信用狀은 「節次」別紙書式에서 정한 樣式대로 各行이 別途 印刷하여 使用하고 있으나 電子文書交換方式에 의할 경우 現행 인쇄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

— > 現행 樣式에 있는 內容을 모두 包含한 Free Format * 형식의
내국신용장 양식을 새로 제정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節次」제52조 改正)

* 전자문서에 수록된 內容을 백지에 출력함으로써 文서를
완성시키는 형태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 改正(案)

現 行	改 正 (案)	비 고
第 1 條~第29條 (생 략)	第 1 條~第29條 (현 행 과 같 음)	
第30條(內國信用狀의 條件) ①~② (생 략) (신 설)	第30條(內國信用狀의 條件) ①~② (현 행 과 같 음) ③「貿易業務 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에서 정하는 電子文書交換方式에 의한 內國信用狀(이하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同 法律 施行規程 第12條의 別表2(書類提出方法에 관한 特例) 第7條에서 정하는 正當發給文書 表示義務를 遵守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의 정의 및 조건 명시
第31條(通知) (생 략)	第31條 (현 행 과 같 음)	
第32條(開設銀行의 어음決濟) ① 開設銀行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支給拒絶事由가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支給提示를 받은 날로부터 3營業日 以內에 어음을 決濟하여야 한다. 1~3. (생 략)	第32條(開設銀行의 어음決濟) ① 開設銀行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支給拒絶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支給提示를 받은 날로부터 3營業日 以內에 어음을 決濟하여야 한다. 1~3. (현 행 과 같 음)	
4. 物品受領證書上의 受領人의 印鑑 또는 署名이 內國信用狀 開設依頼時 申告한 印鑑 또는 署名(物品賣渡確約書上의 것을 基準으로 함)과 相異한 경우	4. 物品受領證書上의 受領人의 印鑑 또는 署名이 內國信用狀開設依頼時 申告한 印鑑 또는 署名(物品賣渡確約書上의 것을 基準으로 함)과 相異한 경우 다만, 受領者의 要請에 의해 開設依頼人이 交付받은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어음을 決濟할 때에는 物品受領證書上의 受領人의 印鑑 또는 署名이 內國信用狀(寫本 包含) 및 物品賣渡確約書(寫本 包含)上의 印鑑 또는 署名과 相異한 경우	○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 확인해야 할 인감 명시
5. 物品受領證書上의 物品明細가 內國信用狀上의 物品明細와 不致한 경우 (신 설)	5. 物品受領證書上의 物品明細가 內國信用狀上의 物品明細와 不致한 경우 다만,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어음을 決濟할 때에는 物品受領證書上의 物品明細가 物品賣渡確約書(寫本 包含)上의 物品明細와 不致한 경우	○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 물품명세 확인대상 명시
6. (생 략) (신 설) (생 략) (생 략) (생 략)	6. 提示된 어음이 偽造, 變造된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경우 7.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이 第30條 第3項에서 定하는 바를 遵守하지 않을 경우 8. (현 행 과 같 음) ② (현 행 과 같 음)	○ 내국신용장의 위·변조 지급거절사유 추가 ○ 근거법률 불이행시 지급거절사유 추가 ○ 호재하
第33條~第37條 (생 략) (신 설)	第33條~第37條 (현 행 과 같 음) 附 則 이 細則은 1995. 1. 3 부터 施行한다.	○ 시행일자 명시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節次」 改正(案)

現 行	改 正 (案)	비 고
第 1 條~第41條 (생 략) 第42條(內國信用狀 開設時의 徵求書類) ① 外國換銀行이 內國信用狀의 開設時 開設依頼人으로부터 徵求하여야 할 書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供給者發行 物品賣渡(受託加工 包含, 以下 같다) 確約書	第 1 條~第41條 (현 행 과 같 음) 第42條(內國信用狀 開設時의 徵求書類) ① 外國換銀行이 內國信用狀의 開設時 開設依頼人으로부터 徵求하여야 할 書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供給者發行 物品賣渡(受託加工 包含, 以下 같다) 確約書 다만, 實收基準金融 受惠業體의 申請으로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을 開設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현 행 과 같 음)	○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개설시 생략(내국신용장어음 매입시 징구)
2~4. (생 략) ②~③ (생 략)	2~4. (현 행 과 같 음) ②~③ (현 행 과 같 음)	
第43條~第47條 (생 략) 第48條(內國信用狀어음 買入時 徵求서류) ①~③ (생 략)	第43條~第47條 (현 행 과 같 음) 第48조(內國信用狀어음 買入時 徵求書類) ①~③ (현행과 같음) 4 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인 경우에는 第1項 및 第3項에 規定된 徵求書類外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追加로 徵求하여야 한다. 1. 內國信用狀 寫本 2. 供給者發行 物品賣渡確約書 寫本 다만, 實收基準金融 受惠業體의 申請으로 當該 內國信用狀이 開設된 경우에 限한다.	○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의 경우 징구할 서류 추가
第49條~第51條 (생 략) 第52條(書式) 內國信用狀 開設申請書의 樣式은 各 外國換銀行의 所定樣式에 의하며, 內國信用狀의 樣式은 別紙 第8-4號 書式에 의한다.	第49條~第51條 (현 행 과 같 음) 第52條(書式) 內國信用狀 開設申請書의 樣式은 各 外國換銀行의 所定樣式에 의하며, 內國信用狀의 樣式은 別紙 第8-4號 書式(電子文書交換方式 內國信用狀의 樣式은 第8-6號 書式)에 의한다.	○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 양식 제정
第53條 (생 략)	第53條 (현 행 과 같 음)	
(신 설)	附 則	
	이 節次는 1995.1.3 부터 施行한다.	○ 시행일자 명시

<별지 제8-6호 서식>

취소불능내국신용장

통지일자 :

전자문서 번호 :

< 개설 내역 >

개설은행 :
개설일자 :
신용장번호 :
개설의뢰인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 :
수혜자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 :
내국신용장 종류 :
개설외화금액 :
개설원화금액 :
전신환매입율 :
물품매도확약서번호 :
물품인도기일 :
유효기일 :
제출서류 : 물품수령증명서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본 내국신용장의 사본

통
통
통
통

기타 구비서류 :

당행은 귀하(사)가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기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행을 지급장소로 하고 개
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한 물품대금전액의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취소불능내국신
용장을 개설합니다. 당행은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고 또한 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환어음이 당행에 제시된 때에는 이를 이익없이 지급할 것을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약속합니다.

대표공급물품명 :
분할인도 허용여부 :
서류제시기간 :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개설근거별 용도 :
기 타 : <원수출신용장 등 내역>

개설근거서류 종류 :
신용장 (계약서) 번호 :

< 발신기관 전자서명 >

발신기관 전자서명 :

1. 이 전자문서는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된 전자문서교환방식 내
국신용장으로서 이 문서를 전송받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혜자는 동 법률 시행규정 제12조의
별표2(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장 여백에 정당발급문서
임을 표시하는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이 신용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상공회의소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 및 관례에 따릅니다.